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4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개요	1
1. 제출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	3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11
3. 개정안 관련 단체 의견	18
4. 주요 검토의견	21
III. 개정안 주요 내용	26
1. 위원회 간 통합 관련 검토	26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	26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상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식물신품종 보호법」 상 “농림종자위원회”의 통합	34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통합	45
(4) 「농촌진흥법」 상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통합	56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산림교육심의위원회”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통합	63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상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통합	72
2. 위원회 폐지 관련 검토	86
(1) 「농업기계화촉진법」 상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폐지	86
(2) 「축산법」 상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	93
3. 위원회 비상설화 관련 검토	99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간척지운영위원회 비상설화	100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비상설화	105
(3)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122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125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비상설화	131
(6) 「농업협동조합법」 상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비상설화	135
(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도시농업협의회 비상설화	138
(8) 「식생활교육지원법」 상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비상설화	143
(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상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	146
(10) 「축산법」 상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비상설화	154
(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비상설화	157
4. 부칙 검토	162

I. 개요

1. 제출경위

- (1) 제 출 자 : 정부
- (2) 제 출 일 : 2024. 7. 23.
- (3) 회 부 일 : 2024. 7.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¹⁾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란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지식의 도입, 행정의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됨.

행정기관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는데,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하며,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써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을 기속하면 의결위원회, 불기속하면 심의위원회로 구분함.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설치되고 있음.

1) 「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²⁾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 수 있음)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³⁾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기속되는 ① 의결위원회, 불기속되는 ② 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 ③ 심의의결위원회도 있음
사무기구	설치가능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설치 불가능

※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3)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6월 기준, 전 부처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총 636개(대통령 소속 21개, 총리·부처 소속 615개)로, 최근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하여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향이 있었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현황]

구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
계	615	19	62	534
행정위원회	42	2	10	30
자문위원회	573	17	52	504

※ 자료 : 행정안전부 작성,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위원회의 증가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 설치 목적과는 다른 위원회 운영과 책임회피, 위인설관형 운영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 등이 수반되었음.

「행정기관위원회법」 4) 역시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문을 두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운영

4)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고자 부처별 자체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진단반 확인·점검 등을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였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⁵⁾.

부처별로 마련된 정비안은 전체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636개 중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이며, 166개(67%)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80개(33%)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⁶⁾”에 따르면, 위원회는 ① 법률 및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는 있으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1년 이상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최근 1년간 회의⁷⁾ 미개최 또는 최근 3년간(‘19년~’21년) 연평균 본회의 개최

5) [위원회 정비 법령개정 부처합동 추진일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위원회 폐지 등을 위한 법령개정안 초안 마련(~7.29., 각 부처)② 법제처 소관 법제관실별 법령개정안 초안 사전검토(8.1.~)③ 행안부 최종 정비안 확정(9월, 행안부)④ 부처별 입법계획 보고 및 법제처 제출(9월)⑤ 부처별 규제심사 사전검토, 정부입법지원센터 입안 및 입법예고 단축 요청(9월)⑥ 부처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 추진(9월)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 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⑦ 법제처 심사 의뢰(9월, 각 부처→법제처)⑧ 차관(9.22.)·국무회의(9.27.) 상정·의결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9.30.), 대통령령 공포 및 시행(10.4.~) |
|--|

※ 자료 : 행정안전부,

6)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법령개정 부처합동 추진계획(안), 2022.7.22.

7) 대면(출석)회의, 서면회의, 본회의, 분과회의 등 모든 형태의 회의

실적이 1회 미만(3년간 총 3회 미만)인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③ 현재 당연직 위원들인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민간위원 수가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존속기한 도래, 설치목적 달성,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변경,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존속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⑤ 수요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위원회에 자유롭게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상 흠결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한 자문 성격의 위원회⁸⁾의 경우 폐지하되, 필요시 비상설 회의체 또는 협의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① 동일한 법령 내에 두개 이상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거나, ②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이 다르더라도,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심의대상이 동일·유사하여 분과위를 활용하는 등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위원회 간 통합을 하도록 하였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 기준]

	정비 대상	정비안
폐지	①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폐 지 ※ 필요시, 비상설 회의체 혹은 협의체로 운영
	②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③공무원들로만 구성 or 민간위원 참여 저조 위원회	
	④설치목적 기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위원회	
	⑤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통합	⑥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유사 위원회 간 통합

※ 자료 : 행정안전부 작성,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8) 폐지 후 정책자문위로 통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정비기준 외에 “최근 3년간 연평균 본회의·분과위 합산 2회 미만 개최”의 자체 정비기준을 통해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를 판단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17개 법률의 위원회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당초 29개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를 12개로 통·폐합 및 비상설화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2개 법률의 위원회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당초 3개의 농촌진흥청 소속 위원회를 2개로 통·폐합하며, 산림청은 4개 법률의 위원회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당초 6개의 산림청 소속 위원회를 4개로 통·폐합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위원회 정비 내역]

구분	당초	정비대상	정비내역			정비후	비고
			통합	폐지			
				비상설 회의체	단순 폐지		
합 계	38개	26	12 → 6	12	2	18	△20개 감축 (△53%)
농식품부	29개	20	6 → 3	12	2	12	△17개 감축 (△59%)
농진청	3개	2	2 → 1	-	-	2	△1개 감축 (△33%)
산림청	6개	4	4 → 2	-	-	4	△2개 감축 (△3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

구분	근거법률	위원회명	정비방안	비고
합계	<정비법률> - 농식품부: 17개 - 농진청: 2개 - 산림청: 4개	<정비방안> - 농식품부: 통합 6→3개, 비상설 12개, 폐지 2개 - 농진청: 통합 2→1개 - 산림청: 통합 4→2개		
농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통합	대통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총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통합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종자위원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운영위원회	비상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비상설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비상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비상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비상설	
	농업협동조합법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비상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비상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협의회	비상설	
	식생활교육지원법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비상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비상설	
	축산법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비상설	
		축산발전심의회	폐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폐지	
농진청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통합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작목위원회		

구분	근거법률	위원회명	정비방안	비고
합계	<정비법률> - 농식품부: 17개 - 농진청: 2개 - 산림청: 4개	<정비방안> - 농식품부: 통합 6→3개, 비상설 12개, 폐지 2개 - 농진청: 통합 2→1개 - 산림청: 통합 4→2개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통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심의위원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통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7682호, 2022.10.4.제출)은 2022. 11. 10.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2023. 06. 22.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당시 주요 논의사항과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같음.

논의사항	논의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 농특위 등 일부 통합 위원회 위원 정수가 확대되는 부분의 실효성 문제 지적 ※ 삶의질위 폐지 및 농특위 위원 구성 확대 : 30명 → 50명	▪ 현재 농어업인 삶의질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 장관 (정부위원) 등을 농특위 위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함 ▪ 위원회 통합 후 삶의질위 기능은 분과위와 특별위를 활용하 고, 본 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정기적(예: 분기 1회)으로 개최할 예정이므로 효율성 제고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 <농특위 · 삶의질위 통합 전후 위원수 비교> <table><tr><th colspan="3" rowspan="2">구분</th><th colspan="2">개정전</th><th>개정 후</th></tr><tr><th>농 특위</th><th>삶의질위</th><th>농 특위</th></tr><tr><td colspan="3">합계</td><td>30명</td><td>25명</td><td>50명 이내</td></tr><tr><td colspan="3">위원장</td><td>민간위원장</td><td>국무총리</td><td>민간위원장</td></tr><tr><td rowspan="3">위원</td><td colspan="2">정부위원</td><td>5명</td><td>15명</td><td>16명*</td></tr><tr><td rowspan="2">민 간 위원</td><td>단체장</td><td>12명</td><td>5명</td><td>12명</td></tr><tr><td>전문가</td><td>12명</td><td>4명</td><td>12명</td></tr></table> ※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 자부 · 보건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장관 · 해수 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 식약처장 등 (← 개정전 중복위원)	구분			개정전		개정 후	농 특위	삶의질위	농 특위	합계			30명	25명	50명 이내	위원장			민간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원	정부위원		5명	15명	16명*	민 간 위원	단체장	12명	5명	12명	전문가	12명	4명	12명
구분					개정전		개정 후																														
			농 특위	삶의질위	농 특위																																
합계			30명	25명	50명 이내																																
위원장			민간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원	정부위원		5명	15명	16명*																																
	민 간 위원	단체장	12명	5명	12명																																
		전문가	12명	4명	12명																																

논의사항	논의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비상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농식품부 계획 - 아울러, 위원회 정비 후속조치로써 '23.8월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10개 분과, 위원 150명) 구성을 완료하여, 정책 추진 시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
- 일부 위원회의 통합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통합 -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	-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병합되어 별도 분과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국가시험 시행의 독립성 저해 우려는 없다는 농식품부 입장 - 다만, 대한수의사회는 두 위원회의 통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농림종자위원회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게 종자산업 발전에 더 큰 동력을 될 것이라는 농식품부 입장 - 한국종자협회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에 동의하며, 종자산업 R&D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
보다 명확한 정책자문위 운영 계획 필요	- 위원회 정비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와 향후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 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 정비 후속조치로써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3.8월 자문위원 150명을 위촉함 - 차 산업 등 세부 품목별·기능별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시적 TF 또는 전문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

[농식품부 소관 농위원회 현황표]

연번	위원회명	소속	성격	정비 대상 여부	정비 방법	정비 전·후 위원구성 비교			
						현행		정비후	
						위원수	구성	위원수	구성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자문	○	통합	30	민간 25 공무원 5	50	민간 34 공무원 16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위원회	국무총리	자문	○	통합	25	민간 9 공무원 16	-	1번 위원회로 통합
3	간척자운영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14	민간 10 공무원 4	-	임기만료 후 필요시 위촉
4	경매감독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7	민간 6 공무원 1	7	민간 6 공무원 1
5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25	민간 14 공무원 11	-	임기만료 후 필요시 위촉
6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통합	28	민간 24 공무원 4	43	민간 35 공무원 8
7	농림종자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통합	15	민간 11 공무원 4	-	6번 위원회로 통합
8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55	민간 38 공무원 17	-	임기만료 후 필요시 위촉
9	농업·농촌공약기능증진작업 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20	민간 14 공무원 6	-	임기만료 후 필요시 위촉
10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폐지	15	민간 12 공무원 3	-	폐지
11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18	민간 3 공무원 15	-	임기만료 후 필요시 위촉
12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21	민간 14 공무원 7	21	민간 14 공무원 7
13	농지관리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20	민간 14 공무원 6	20	민간 14 공무원 6
14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15	민간 14 공무원 1	-	임기만료 후 필요시 위촉
15	도시농업협의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15	민간 8 공무원 7	-	임기만료 후 필요시 위촉
16	동물복지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20	민간 15 공무원 5	20	민간 15 공무원 5
17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통합	15	민간 13 공무원 2	-	21번 위원회로 통합
18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30	민간 25	30	민간 25

연번	위원회명	소속	성격	정비 대상 여부	정비 방법	정비 전·후 위원구성 비교			
						현행		정비후	
						위원수	구성	위원수	구성
							공무원 5		공무원 5
19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15	민간 13 공무원 2	15	민간 13 공무원 2
20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 농업인등지원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18	민간 14 공무원 4	18	민간 14 공무원 4
21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통합	83	민간 66 공무원 17	98	민간 79 공무원 19
22	중앙농업·농촌맞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19	민간 18 공무원 1	-	임기만료후 필요시위촉
23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식품부	행정	○	비상설	10	민간 6 공무원 4	-	임기만료후 필요시위촉
24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 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9	민간 8 공무원 1	-	임기만료후 필요시위촉
25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15	민간 12 공무원 3	-	임기만료후 필요시위촉
26	축산발전심의회위원회	농식품부	자문	○	폐지	25	민간 19 공무원 6	-	폐지
27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농식품부	행정	×		8	민간 1 공무원 7	8	민간 1 공무원 7
28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심의회	농식품부	자문	○	비상설	15	민간 10 공무원 5	-	임기만료후 필요시위촉
29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24 신설)	농식품부	자문	×		16	민간 14 공무원 2	16	민간 14 공무원 2

* 통합위원회의 정비후 위원수는 추정치로 실제 위촉 시 변경(축소)될 수 있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별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분과위 포함)]

연번	위원회명	연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	서면	합계	출석	서면
1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1년	17	4	3	1	13	10	3
		2022년	14	4	2	2	10	10	0
		2023년	16	4	4	-	12	12	0
		합계	47	12	9	3	35	32	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21년	3	1	0	1	2	0	2
		2022년	3	1	0	1	2	0	2
		2023년	2	1	0	1	1	0	1
		합계	8	3	0	3	5	0	5
3	간척지운영위원회	2021년	1	1	0	1	0	0	0
		2022년	1	1	0	1	0	0	0
		2023년	1	1	0	1	0	0	0
		합계	3	3	0	3	0	0	0
4	경마감독위원회	2021년	0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5	국가식생활교육 위원회	2021년	0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6	농림식품과학기술 위원회	2021년	3	3	2	1	0	0	0
		2022년	4	4	4	0	0	0	0
		2023년	5	5	4	1	0	0	0
		합계	12	12	10	2	0	0	0
7	농림종자위원회	2021년	5	4	0	4	1	1	0
		2022년	8	4	1	3	4	2	2
		2023년	4	4	0	4	0	0	0
		합계	17	12	1	11	5	3	2
8	농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	2021년	8	0	0	0	8	7	1
		2022년	6	0	0	0	6	6	0
		2023년	10	0	0	0	10	10	0
		합계	24	0	0	0	24	23	1
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2021년	0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10	농업기계화정책 심의회	2021년	2	0	0	0	2	2	0
		2022년	2	1	0	1	1	1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4	1	0	1	3	3	0
11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2021년	7	7	0	7	0	0	0
		2022년	5	5	0	5	0	0	0

연번	위원회명	연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	서면	합계	출석	서면
		2023년	4	4	0	4	0	0	0
		합계	16	16	0	16	0	0	0
12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2021년	3	3	1	2	0	0	0
		2022년	3	3	0	3	0	0	0
		2023년	4	4	0	4	0	0	0
		합계	10	10	1	9	0	0	0
13	농지관리위원회	2021년	0	0	0	0	0	0	0
		2022년	6	6	6	0	0	0	0
		2023년	9	9	9	0	0	0	0
		합계	15	15	15	0	0	0	0
14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	2021년	2	1	1	0	1	0	1
		2022년	2	1	1	0	1	0	1
		2023년	3	2	1	1	1	1	0
		합계	7	4	3	1	3	1	2
15	도시농업협의회	2021년	2	2	0	2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1	1	0	1	0	0	0
		합계	3	3	0	3	0	0	0
16	동물복지위원회	2021년	3	3	3	0	0	0	0
		2022년	3	3	3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6	6	6	0	0	0	0
17	수의사국가시험 위원회	2021년	4	4	2	2	0	0	0
		2022년	4	4	1	3	0	0	0
		2023년	6	6	1	5	0	0	0
		합계	14	14	4	10	0	0	0
18	식품산업진흥 심의회	2021년	3	2	1	1	1	1	0
		2022년	6	4	0	4	2	1	1
		2023년	3	2	0	2	1	1	0
		합계	12	8	1	7	4	3	1
19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심의회	2021년	1	1	1	0	0	0	0
		2022년	2	2	2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3	3	3	0	0	0	0
20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2021년	5	5	2	3	0	0	0
		2022년	1	1	0	1	0	0	0
		2023년	3	3	0	3	0	0	0
		합계	9	9	2	7	0	0	0
21	중앙가축방역 심의회	2021년	16	0	0	0	16	2	14
		2022년	39	0	0	0	39	2	37
		2023년	45	0	0	0	45	1	44
		합계	100	0	0	0	100	5	95
22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2021년	2	2	0	2	0	0	0
		2022년	2	2	0	2	0	0	0
		2023년	2	2	0	2	0	0	0
		합계	6	6	0	6	0	0	0

연번	위원회명	연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	서면	합계	출석	서면
23	지리적표시심판 위원회	2021년	1	1	1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1	1	1	0	0	0	0
24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2021년	0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25	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	2021년	10	1	1	0	9	9	0
		2022년	8	1	1	0	7	6	1
		2023년	1	0	0	0	1	1	0
		합계	19	2	2	0	17	16	1
26	축산발전심의 위원회	2021년	1	1	0	1	0	0	0
		2022년	1	1	0	1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2	2	0	2	0	0	0
27	품종보호심판 위원회	2021년	2	2	2	0	0	0	0
		2022년	3	3	2	1	0	0	0
		2023년	10	10	6	4	0	0	0
		합계	15	15	10	5	0	0	0
28	해외농업·산림자 원개발심의회	2021년	1	1	0	1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1	1	0	1	0	0	0
		합계	2	2	0	2	0	0	0
29	중앙농촌공간정책 심의회	2021년	0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3. 개정안 관련 단체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원회 정비 법안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음.

협의를 진행한 대부분의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원회 정비법안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나,

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에 대하여 대한수의사회가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해 현행유지를,

②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대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의견 수렴 약화 우려로 현행유지를 요구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②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의 경우는 비상설화로 정비방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임.

[위원회 정비방안 유관 관련 단체 설명결과]

구분	법명	위원회명 (정비방법)	설명단체	설명결과	향후계획
제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앙가축 방역심의회 수의사국가 시험위원회 (통합)	대한수의사회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대한수의사회 는 위원회간 목적과 기능상 유 사점이 적고 국가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현 행유지를 요구	업무협의를 통해 지속적 으로 설명할 예정
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 (비상설) 지리적표시 심판위원회 (비상설)	한국지리적표시 특산물연합회	농식품부 위원회 정비법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반대 의견 없었음	해당 없음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폐지)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 유통협동조합, 대동농업기계, LS엠트론 등	“농업기계정책심의회” 위원을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혁신국 분과위) 위원으로 다수(5명이상) 위촉 등을 조건으로 농식품부 정 비방안 수용에 대해 이견없음	해당 없음
제17조	식품신제품 보호법	농림식품과학 기술위원회 농림종자위원회 (통합)	한국종자협회	농림과학기술위원회 내 특별 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을 설명하였 으며, 동의하였음	해당 없음
제19조	지역특화작 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사업 심의위원회 지역특화 작목위원회 (통합)	지역특화작목 발전협회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농촌진 흥사업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 하는 정비법안에 대해 협회에 설명하였으며, 반대 의견 없었음	해당 없음
제20조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 사업분쟁 조정위원회 (비상설)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식품부 위원회 정비법안에 대해 각 단체에 설명하였으며, 반대 의견 없었음	해당 없음

구분	법명	위원회명 (정비방법)	설명단체	설명결과	향후계획
제21조	축산법	축산물수급조 절협의회 (비상설)	대한한돈협회, 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농식품부 위원회 정비법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반대 의견 없음	해당 없음
		축산발전심의 위원회 (폐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 한국시습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도종닭협회 등	농식품부 위원회 정비법안에 대 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업무협의 결과, 비상설화 추진을 조건으로 농 식품부 정비방안 수용기로 함	위원회 정비방안 수정 추진
제23조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심의회 (비상설)	해외농업자원 개발협회	농식품부 위원회 정비법안에 대해 각 단체에 설명하였으며, 반대 의견 없었음	해당 없음

4. 주요 검토 의견

현재 상당수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능과 목표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함으로써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일부 위원회의 통·폐합 및 비상설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의 경우, 두 위원회 간 목적과 기능상 유사점이 적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통합 시 수의사 국가시험 시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의 개정사항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와 분과위원회별 운영 및 심의사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므로 수의사 국가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임.

②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통합하면서 현재 “농림종자위원회”가 수행하는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업무를

“품종보호심판위원회”로 이관하여 행정심판과 분쟁조정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위원이 수행하도록 것은 행정심판과 분쟁조정의 목적, 적용분야, 절차, 법적효력 등이 상이하고, 유사 사례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심판과 분쟁조정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두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면 업무 연속성, 전문성 확보, 운영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③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통합의 경우, 위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두 위원회가 존속기간 존재여부, 사무국 존재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원회 통합 후 효율적 운영 방안과 추가적인 조문정비 등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임.

④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지에서 비상설화로 의견을 수정하였는 바, 이를 고려한 법안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⑤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비상설화의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연평균 8회)을 고려할 때 비상설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고, 공무원만으로 구성하게 되는바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체계 정합성을 위한 일부 조문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의 준사법적 성격 및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권리구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비상설화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변리사, 특허심판원 및 전문가 등의 심판위원 인력 명단을 상시 관리하고, 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위원회 구성 및 신속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⑥ “농어업대책심의위원회” 비상설화의 경우, 연평균 본회의 개최 건수(5.3건)를 고려했을 때 비상설화의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재해대책 및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예비비 및 의연금 등의 사용에 대한 사항, 재해 피해조사, 군장비 병력 지원 필요성 심의 등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설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발생 등으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농어업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⑦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및 필요적 사전심의 규정 삭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필요적 심의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법을 개정하기 보다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운영심의위원회’가 비상설 ‘운영협의회’로 개정되더라도 심의 기능은 동일하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시 협의회를 소집해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⑧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의 경우,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 인력 명단을 상시 구비함에 따라, 분쟁 신청에 따른 즉각적인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⑨ 통폐합되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자문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폐합되는 위원회 분야의 역할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⑩ 폐지되는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외의 경우, 해당 기능을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향후 심의·자문에 공백이 없도록 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Ⅲ. 개정안 주요 내용

1. 위원회 간 통합 관련 검토

- (1)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안 제1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개정하고,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조 문	법률명	현 행	개 정
안 제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와 수의사 국가시험 위원회를 별도 운영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와 수의사 국가시험 위원회를 “중앙가축방 역수의심의회”로 통합

【제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 방역심의회를 둔다.	제4조(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등) ①	가축방역 및 수의인력과	----- 중앙 가축방역수의심의회----- 지역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

현	행	개	정	안
② <u>중앙가축방역심의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신 설>		-----. ② <u>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u>-----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수의사법」 제8조에 따른 수 의사 국가시험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수의사 국가시험과 관 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6. (생 략)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 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u>중앙가 축방역심의회의</u>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u>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u>의 심 의 결과에 따른다. 1. ~ 5. (생 략) ④ <u>중앙가축방역심의회</u>와 지방가축 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축산· 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

현	행	개	정	안
다.		-.		
<신 설>				
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 ----- -----.		
1. ~ 5. (생 략)		⑦ 제6항----- -----.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⑧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 ----- -----.		
① (생 략)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나. 검토의견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970년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임.

심의회의 주요 자문 내용은 가축방역 대책 수립,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 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등이며, 최근 3년간 100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출석 5회, 서면 95회)하였음.

<최근 3년간 중앙가축방역심의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6	0	0	0	16	2	14
2022년	39	0	0	0	39	2	37
2023년	45	0	0	0	45	1	44
총계	100	0	0	0	100	5	9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수의사법 시행령」⁹⁾에 따라 2006

9) 「수의사법 시행령」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년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심의·조정 자문위원회임.

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은 수의사국가시험 제도개선 및 운영 사항, 국가시험 출제위원 선정사항,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 등이며, 최근 3년간 14차례 본회의를 개최(출석 4회, 서면 10회)하였음.

<최근 3년간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4	4	2	2	0	0	0
2022년	4	4	1	3	0	0	0
2023년	6	6	1	5	0	0	0
총계	14	14	4	10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향은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임.

그러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방역과 검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수의사 시험의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임.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료인¹⁰⁾ 시험, 「약사법」 제8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¹¹⁾에 대한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를 구성(26명)하여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관련 제반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미국수의사회(AVMA)가 국가시험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수의사법」에 따라 농림수산성에 수의사심의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중에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에 수의사가 포함되기는 하나, 축산단체 등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의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위원이 포함될 수 있음.

이에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별도의 위원회 운영이 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동 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되었던 일괄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¹²⁾ 결과,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중

10)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11)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양가축방역심의회의와 통합될 경우 국가시험 시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의의 개정사항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와 분과위원회별 운영 및 심의사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므로 수의사 국가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임.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2. 9. 7. ~ '22. 9. 16.
- 제출의견(528건) 세부내용 :
 -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 제1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관련 의견 제출 총 526건
 - (의견 내용)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와 통합될 경우 국가시험 시행의 독립성 저해 우려
 - (의견제출기관) 단체 4건(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의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 개인 522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및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의 비교>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의사법 시행령」
설립	1970. 7. 9.	2006. 1. 26.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성격	자문위원회(단순 자문)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가축방역·검역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수의사국가시험 시행추진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주요기능	· 가축방역 대책 수립 ·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 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자문	· 수의사국가시험 제도개선 및 운영 사항 심의 · 국가시험 출제위원 선정사항 심의 ·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 심의 등
예산('24)	4,000만원	900만원
위원구성	· 위원장 :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 위원 총 83명 - 공무원: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방역정책국장 등 17명 - 민간위원: 학계 27, 축산단체 13, 민간 26 등 66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 위원장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위원 총 15명 - 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질병관리부장 등 2명 - 민간위원: 학계 10, 민간 3 등 13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100회(출석 5, 서면 95)	14회(출석 4, 서면 10)
주요 성과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 살처분범위 조정 및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등	· 수의사국가시험 지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상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농림종자위원회”의 통합(안 제3조
및 제17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조 문	법률명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위 원회와 농림종자위 원회를 별도 운영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 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하고, 종자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품종보호심 판위원회로 이관
안 제17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	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			
다.	다.			

현	행	개	정	안
1. ~ 5.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다른 법령에서 <u>농림식품과학기 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 항</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 ⑤ (생 략)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 조에 따른 <u>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야 한다.</u>		⑥ ----- ----- 「 <u>농림 식품과학기술 육성법</u> 」 제5조의2에 따른 <u>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u>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8 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 <u>의회</u> ----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 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u>관장하기</u>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 ----- <u>관장하고,</u> <u>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을 조정하기</u>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		제118조(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자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		

현	행	개	정	안
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 ⑦ (생략)		--. -----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중자위원</u>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가. <u>중자위원</u>		--		
나. <u>중자위원</u> 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가. <u>심판위원</u>		
2. <u>중자위원</u> 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u>심판위원</u> -----		
3. <u>중자위원</u> 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2. <u>심판위원</u> -----		
4. <u>중자위원</u> 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u>심판위원</u> -----		
② <u>중자위원에게</u>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u>중자위원회</u>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u>중자위원회</u> 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4. <u>심판위원</u> -----		
		② <u>심판위원에게</u> -----		

		----- <u>심판위원회</u> -----		
		----- <u>심판위원회</u> -----		

현	행	개	정	안
의 결정을 한다.				-----.
③ <u>종자위원회</u> 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u>종자위원회</u>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③ <u>심판위원회</u> 는 -----		----- <u>심판위원회</u>
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u>종자위원회</u> 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u>심판위원회</u> -----		-----
② (생략)				-----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u>종자위원회</u> 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u>심판위원회</u> -----		-----
② ~ ④ (생략)				-----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종자위원회</u> 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u>심판위원회</u> -----		-----
② ~ ④ (생략)				-----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u>종자위원회</u> 는 이의신청의		⑤ -----		----- <u>심판위원회</u> -----

현	행	개	정	안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0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심판위원 및 종자위원</u>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0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심판위원</u> -----		

		-----.		

나. 검토의견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2009년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임.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며, 최근 3년간 12차례의 회의를 개최(출석 10회, 서면 2회)하였음.

<최근 3년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3	3	2	1	0	0	0
2022년	4	4	4	0	0	0	0
2023년	5	5	4	1	0	0	0
총계	12	12	10	2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농림종자위원회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2013년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임.

위원회는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국유 품종보호권 처분에 관한 자문,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통상실시권¹³⁾ 설정에 관한 재정¹⁴⁾의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본회의 12차례(출석 1회, 서면 11회), 분과위원회 회의 5차례(출석 3회, 서면 2회)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3년간 농림종자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5	4	0	4	1	1	0
2022년	8	4	1	3	4	2	2
2023년	4	4	0	4	0	0	0
총계	17	12	1	11	5	3	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개정안은 농림종자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기존 농림종자위원회의 기능인 ①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자문, ②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¹⁵⁾의 심의는 ‘농림식품

13)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

14) 공익목적이나 독점적 남용방지 등을 위해 특허청장이나 법원이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절차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과학기술위원회’가, ③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음.

참고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¹⁶⁾는 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상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는 행정위원회이며, 이번 위원회 정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농림종자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기능 조정>

현행법 (농림종자위원회)		개정안	개정 필요 조문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자문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118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제67조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90조, 제119조부터 제123조까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므로, 품종보호권과 통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 ~ ⑤ (생략)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등 목적과 취지를 포괄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 기후위기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 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한 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식품과학기술 등 거시적인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 내에 종자위원회가 통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품종보호권 보호 등의 종자 관련 분야가 소홀하게 다뤄질 우려 또한 있어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품종과 관련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고, 품종보호 등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거나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기존 농림종자위원회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상 농림종자위원회가 수행중인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업무’를 ‘품종보호심판위원회’로 이관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과 분쟁조정은 그 목적, 절차, 법적효력, 적용분야가 상이한바, 현재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분쟁조정 업무만을 이관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전문적 운영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행정심판과 분쟁조정 비교】

구분	행정심판	분쟁조정
목 적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적 구제 절차	민사적 또는 상업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돕는 절차
절 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의 취소, 변경 등을 결정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조정안이 제시된 후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서가 작성됨.
관 할 기 관	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를 전문적으로 담당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정위원회가 존재 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 적 효 력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청은 재결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강제력 없음.
적 용 분 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즉 행정법 영역에서 적용	주로 민사적 또는 상업적 분쟁, 계약 분쟁 등 사적 영역에서 적용

특히 현재 행정심판과 분쟁조정을 하나의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는 사례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일괄정비를 통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종보호권 보호강화를 위한 품종보호심판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두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면 업무 연속성, 전문성 확보, 운영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의
 통합(안 제5조 및 제6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삭제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 문	법률명	현 행	개 정
안 제5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별도 운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합
안 제6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또한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통합 관련 기타 개정 사항>

	현행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개정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위원회 인원	30명 이내	25명 이내	50명 이내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촉직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 단체 대표 12명 이내, 농어업농어촌 전문가 12명 이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 단체 대표 12명 이내, 농어업농어촌 전문가 12명 이내

**【제5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 협의 또는 심의-----.		
1. ~ 8. (생략)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생략)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50명 -----.		
②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생략)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제7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u>협의</u>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u>협의 결과의 보고 등</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u>협의</u>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협의 또는 심의</u>----- ----- ----- -----. 제12조(<u>협의·심의 결과의 보고 등</u>) ① ----- <u>협의 또는 심의</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u>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u>-----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현	행	개	정	안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세우고</u> 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세우고	-----	-----
1. 기본계획		② (현행과 같음)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삭 제>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1. <u>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u> 2. <u>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 · 교육 ·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⑤ <u>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⑥ <u>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u> ⑦ <u>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 ⑧ <u>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u>				

현	행	개	정	안
둔다.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 따라 2019년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임.

위원회의 주요 협의 내용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대한 사항,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 먹거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최근 3년간 본회의 12차례(출석 9회, 서면 3회), 분과위원회 회의 35차례(출석 32회, 서면 3회) 등 총 4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3년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7	4	3	1	13	10	3
2022년	14	4	2	2	10	10	0
2023년	16	4	4	-	12	12	0
총계	47	12	9	3	35	32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법」에 따라 2004년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임.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어업인 복지증진·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 총괄·조정, 각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한 기본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배분기준 마련 및 구체적인 배분 등임.

위원회는 통상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 심의 시에는 국무총리 주재의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그 외에는 서면 회의로 개최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본회의 3차례(출석 0회, 서면 3회), 분과위원회 회의 5차례(출석 0회, 서면 5회) 등 총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3년간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3	1	0	1	2	0	2
2022년	3	1	0	1	2	0	2
2023년	3	1	0	1	1	0	1
총계	9	3	0	3	5	0	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논의주제가 농어촌이라는 점, 다수부처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는 점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과 관련한 기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부처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수월해지는 등 관련 정책 심의·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통합될 경우, ① 위원수가 3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점 ②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현재 존속기한이 없으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따른 존속기한('29. 4. 24까지)이 있다는 점 ③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별도 사무국이 없으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별도 사무국이 있어 농식품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간 업무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비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법적 근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설립	2019. 4. 25.	2004. 12. 8.
존속기한	존속기한 : 29.4.2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13조)	-
소속	대통령	국무총리
성격	자문위원회(순수자문)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사무국	있음	없음
설치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종합적 비전 제시와 관련부처 추진 정책의 총괄조정
주요기능	· 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협의 ·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대한 사항 협의 ·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 민 먹거리에 관한 사항 협의 등	· 농어업인 복지증진,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 총괄·조정 · 각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한 기본계획 심의 및 추진 실적 점검·평가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농 어촌특별세 재원의 배분기준 마련 및 구체적인 배분 등
예산	33억 8,800만원 (*별도 예산 편성)	10억 7,000만원 (*별도 예산 편성)
위원구성	· 위원장 : 대통령의 위촉 · 위원 총 30명 -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등 5명 - 민간위원: 위원장, 농어업단체 12, 농어업분야전문가 12 등 25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총 25명 - 공무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16명 - 민간위원: 농어업단체 5, 산업계 4 등 9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47회(출석 41, 서면 6)	8회(출석 0, 서면 8)
주요 성과	·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23.12.)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구축 및 지수결과 발표('24.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4회 수립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한편, 개정안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를 삭제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현행법 및 개정안의 개별조문에서 위원회 필요적 심의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심의사항의 개별 근거조문>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이후 심의근거규정
기본계획	(현행법) 제5조제2항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
해당연도 시행계획	(개정안) 제6조제1항에 반영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현행법) 제9조의2제3항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농특위법 제2조제2항제7호

다만,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전년도)’의 경우 개별조항에 위원회 심의 근거가 없고, 제44조제4항¹⁷⁾에서도 그 인용조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농촌진흥법」상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통합(안 제12조 및 제19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회의로 해당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조 문	법률명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른 법령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근거 마련
안 제19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둔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12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농 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다른 법령에서 농촌진흥사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 항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 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 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① 지역특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 「농촌진흥법」 제6 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	행	개	정	안
<u>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u>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2. <u>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u>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③ <u>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u> ④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1. <u>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u> 2.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u>				

현	행	개	정	안
<u>단에 속하는 공무원</u> <u>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u> <u>서 추천하는 사람</u> <u>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u> <u>경험이 풍부한 사람</u> <u>⑤ 제1항의 심의·조정 및 그 밖에</u> <u>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농촌진흥사업심의회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2014년 구성된 농촌진흥청 소속 자문위원회임.

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조정,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최근 3년간 6차례의 회의를 개최(출석 0회, 서면 6회)하였음.

<최근 3년간 농촌진흥사업심의회 회의개최 실적>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	1	1	0	1	0	0	0
2022	2	2	0	2	0	0	0
2023	3	3	0	3	0	0	0
총계	6	6	0	6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지역특화작목위원회는 「지역특화작목법」에 따라 2019년에 구성된 농촌진흥청 소속 자문위원회임.

위원회는 지역특화작목¹⁸⁾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최근 3년간 본회의 4차례(출석 2회, 서면 2회), 분과위원회 회의 3차례(출석 2회, 서면 1회) 등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3년간 지역특화작목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	4	1	1	0	3	2	1
2022	1	1	1	0	0	0	0
2023	2	2	0	2	0	0	0
총계	7	4	2	2	3	2	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농촌진흥사업심의회는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농촌진흥청의 정책 및 사업 등의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의 정책 중 일부인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

18) 「지역특화작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항의 심의를 포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위원회 통·폐합으로 인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의 충실한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및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비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지역특화작목위원회
법적 근거	농촌진흥법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구성	2014. 3. 13.	2019. 7. 9.
소속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정책 등 심의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시행)계획, 지역 발전계획 수립 등을 심의·조정
주요기능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조정 심의 · 농촌진흥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예산	없음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촌진흥청 차장 · 위원 : 총 20명 - 공무원: 차장 등 5명 - 민간위원: 학계 4, 경제·기업·금융인	· 위원장(당연직) : 농촌진흥청장 · 위원 : 총 27명 - 공무원: 청장 등 12명 - 민간위원: 언론·시민단체 9, 학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지역특화작목위원회
	4 등 15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4 등 15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6회(서면 6)	7회(출석 4, 서면 3)
주요 성과	· 기관 주요 사업계획(농촌진흥사업 계획, 치유농업 계획) 및 농업·농촌의 현안사항인 청년농업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방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시행 - 지역 수요와 전략에 기반하여 69개 지역특화작목 선정 및 육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산림교육심의위원회”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통합(안 제15조 및 제16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림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조 문	법률명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둔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종합계획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안 제16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	다른 법령에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근거 마련

이를 위해 개정안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하도록 함.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통합 관련 기타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위원회 인원	20명 이상 30명 이내	3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회 구성	산림문화·휴양, <u>산림교육</u>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u>6명</u> 이내	산림문화·휴양, <u>산림교육</u>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u>26명</u> 이내

【제15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u>산림교육심의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② ----- ----- ----- ----- ----- -----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u>산림복지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			

현행	개정안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u>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u> <u>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u> <u>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u>	-----. ③ ~ ⑦ (현행과 같음) <u>제6조(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u> <u>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u>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u> <u>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u> <u>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현	행	개	정	안
	원을 들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위원회-----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② ----- ----- 30명 이상 50명 -----

현	행	개	정	안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④ ----- ----- ----- -----.
1.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u>6명</u> 이내				1. ----- ----- ----- <u>26명</u>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 ----- ----- -----. <u>이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교육법」에 따라 2012년 구성된 산림청 소속 자문위원회임.

심의위원회는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산림교육센터 지정,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최근 3년간 12차례의 회의를 개최(출석 10회, 서면 2회)하였음.

<최근 3년간 산림교육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4	4	3	1	0	0	0
2022년	4	4	4	0	0	0	0
2023년	4	4	3	1	0	0	0
총계	12	12	10	2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는 「산림복지법」에 따라 2016년 구성된 산림청 소속 자문위원회임.

심의위원회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며,

최근 3년간 본회의 11차례(출석 9회, 서면 2회), 분과위원회 회의 0차례 등 총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3년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4	4	4	0	0	0	0
2022년	3	3	2	1	0	0	0
2023년	4	4	3	1	0	0	0
총계	11	11	9	2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산림복지법」상의 산림복지와 산림복지서비스¹⁹⁾는 산림휴양, 교육 및 치유 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산림교육종합계획,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 등 기존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산림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개정안은 현행 산림복지심의위원회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산림복지심의회가 모두 포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확대 재구성하였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산림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심의사항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 「산림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 10. (생략)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도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위원회의 통·폐합은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방안으로 보임.

다만, 산림교육심의 사항 중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통상 2분기 소요), 양성기관 심의(통상 1분기 소요) 등의 경우, 서류검토와 현장조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일시 심의가 어려워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므로 분과위원회 구성 시 산림교육관련 전문가를 적절히 배치하는 등 심의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림교육심의위원회 및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비교>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복지심의위원회
법적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구성	· 2012. 10. 10.	· 2016. 11. 22.
소속	· 산림청	· 산림청
성격	· 자문위원회(심의·조정)	·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목적	·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주요기능	·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및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복지심의위원회
	·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	변경 ·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 관련 사항 · 국가숲길 지정 등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예산	· 1,200만원	· 3,450만원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산림청 차장 · 위원 총 20명 - 당연(7명), 위촉(13명) - 공무원(7명), 민간위원(13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22.12.1. ~ '24.11.30.)	· 위원장(당연직) : 산림청 차장 · 위원 총 23명 - 당연(5명), 위촉(18명) - 공무원(5명), 민간위원(18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23.11.22 ~ '25.11.21.) - 위촉위원 임기 : 2년('22.11.22 ~ '24.11.21.)
최근3년간 회의실적 ('21~'23)	· 12회(출석 10, 서면 2)	· 11회(출석 9, 서면 2)
주요성과 ('23년기준)	· 제1~3차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13~'22)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637건)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69개소) · 산림교육센터 지정(23개소)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18~'22) · 산림복지지구 지정 : 11개소(국립 1, 공립 10개소)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9건) · 산림레포츠 시설 지정(4건) 및 국가숲길 지정(6개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상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통합(안 제14조 및 제22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를 삭제하는 한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개정하고, 이 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심사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두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임.

조 문	법률명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와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규정 삭제
안 제2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통합

또한 개정안은 「목재이용법」에서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 통합 관련 기타 개정 사항>

	추가 개정사항
목재이용법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의 심사를 미리 거쳐야 하는 사항 추가 규정 -(안 제10조의4) 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 변경 신청 시 인증내용을 변경할 때 -(안 제14조제3항)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기준을 정할 때 -(안 제17조제7항)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의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안 제18조제1항) 목재제품의 신기술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안 제20조제10항)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안 제22조제5항)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가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때 -(안 제31조제1항·제4항)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 및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탄소흡수원법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이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봄

**【제1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③ ----- -----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			

현	행	개	정	안
	<u>육프로그래밍의 인증에 관한 심사</u> 3. <u>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u> 4. <u>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u> 5. <u>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u> 6. <u>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u>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④ <u>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u> ⑤ <u>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u>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 ----- ----- ----- -- <u>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u>--. ② -----

현	행	개	정	안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u>해당하면</u> 위원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u>회의 심사를 거쳐</u> -----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생략)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u>제10조의4제2항</u> 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②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u>목재이용위원회의</u>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		----- <u>제10조의4제3항</u>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생략)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u>위원회</u> -----
<신설>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증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u>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u>		-----.

현	행	개	정	안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u>목재이용위원회</u> 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 ----- ----- <u>위원회</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u>품질 기준</u> 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 ----- ----- ----- -- <u>품질 기준</u> 을 <u>위원회의 심사</u> 를 거쳐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u>산림청장은 제9항에 따른 자체 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u>		
제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 ④ (생략)		제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⑤ ----- ----- ----- ----- <u>때에는 위원회의 심사</u> 를 거쳐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 ----- -----		

현행	개정안
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⑤ (생략)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 12. (생략)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5. (생략)	----- <u>등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u>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의4제3항</u>----- 3. ~ 12.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u>----- ----- ----- -----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벌칙) ① (생략)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3항제1호----- ----- ----- ---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u>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 ----- ----- ----- ----- ----- ----- <u>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u> ----- ----- ----- -----.			

현행	행안
④ ~ ⑥ (생략)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u>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u>를 둔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 ① ---- 심의 또는 심사----- -----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위원회----- ----- ----- -----.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① ----- ----- ----- ----- ----- ----- -- 위원회-----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보고·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회-----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1. <u>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2013년 구성된 산림청 소속 자문위원회임.

위원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 목재 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및 인증,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심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목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을 수행하며,

최근 3년간 본회의 0차례, 분과위원회 회의 14차례(출석 5회, 서면 9회) 등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6	0	0	0	6	2	4
2022년	2	0	0	0	2	1	1
2023년	2	0	0	0	6	2	4
총계	14	0	0	0	14	5	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는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2013년 구성된 산림청 소속 자문위원회임.

위원회는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 수립·변경 심의, 산림탄소 상쇄 운영 표준 제정 운용,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결과 심의,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의 시책 수립·지원 등을 수행하며,

최근 3년간 7차례의 회의를 개최(출석 1회, 서면 6회)하였음.

<최근 3년간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2	2	0	2	0	0	0
2022년	3	3	0	3	0	0	0
2023년	2	2	1	1	0	0	0
총계	7	7	1	6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라는 목적 내에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활성화가 포함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위원회 및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비교>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구성	· 2013. 5. 24.	· 2013. 3. 29.
소속	· 산림청	· 산림청
성격	· 자문위원회(심의·조정)	·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목적	· 지속적인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설치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한 자문, 심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주요기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및 인증 ·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심사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 목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	·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 수립·변경 심의 ·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 제정 운용 · 산림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결과 심의 ·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의 시책 수립·지원
예산	· 1,000만원	· 1,400만원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산림청 차장 · 위원 총 20명 - 당연(10명), 위촉(10명) - 공무원(7명), 민간위원(13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24.6.29. ~ '26.6.28)	· 위원장(당연직) : 산림청 차장 · 위원 총 20명 - 당연(10명), 위촉(10명) - 공무원(10명), 민간위원(10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23.9.8. ~ '25.9.7.)
최근3년간 회의실적 ('21~'23)	· 14회(출석 5, 서면 9)	· 7회(출석 1, 서면 6)
주요성과 ('23년기준)	· 목재이용종합계획(2020년~2024년) 수립 · 목재제품 신기술 9건 지정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11개 기관 지정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규정 심의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심의 ·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정심의 ·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등 중장기 계획자문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그러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는 당초 “목재이용활성화, 목재산업경쟁력, 목재교육” 등 3개 분과로 운영함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 심의·심사 활동을 하고 있었음.

위원회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회 활동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므로, 위원회 구성 내실화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위원회 폐지 관련 검토

(1)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폐지(안 제8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 목표설정과 제도발전, 농업기계화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자문 위원회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u>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u>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u>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u>	<삭제>		

현	행	개	정	안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2. <u>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u> 3. <u>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u>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u>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2. <u>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u>			

현	행	개	정	안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는 최근 3년간 본회의 1차례(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위원회 회의 3차례(출석 3회) 등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심의회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개요>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법적 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
구성	2013. 12. 13.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설치 목적	·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에 관한 정책 심의																																														
주요기능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제도발전, 농업기계화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위원 총 15명 : 당연(6명), 위촉(9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등 3명 - 민간위원: 교육인 2, 경제·기업 등 2, 방송·시민단체 2, 유관기관 6 등 12명 - 위촉위원 임기 : 3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4회(출석 3, 서면 1)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총계</th><th colspan="3">본회의</th><th colspan="3">분과위원회</th></tr><tr><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r><tr><td>2021년</td><td>2</td><td>0</td><td>0</td><td>0</td><td>2</td><td>2</td><td>0</td></tr><tr><td>2022년</td><td>2</td><td>1</td><td>0</td><td>1</td><td>1</td><td>1</td><td>0</td></tr><tr><td>2023년</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총계</td><td>4</td><td>1</td><td>0</td><td>1</td><td>3</td><td>3</td><td>0</td></tr></table>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2	0	0	0	2	2	0	2022년	2	1	0	1	1	1	0	2023년	0	0	0	0	0	0	0	총계	4	1	0	1	3	3	0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2	0	0	0	2	2	0																																							
	2022년	2	1	0	1	1	1	0																																							
2023년	0	0	0	0	0	0	0																																								
총계	4	1	0	1	3	3	0																																								
주요 성과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조정 및 심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와 관련한 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이어서 관련 정책 추진 및 산업 분야의 위축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지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마련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법령개정 부처합동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 폐지 후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안전에 따라 정책자문위원 외 추가 민간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3. 5. 16. 「행정기관위원회법」에 기능 중복 위원회 설치 금지 및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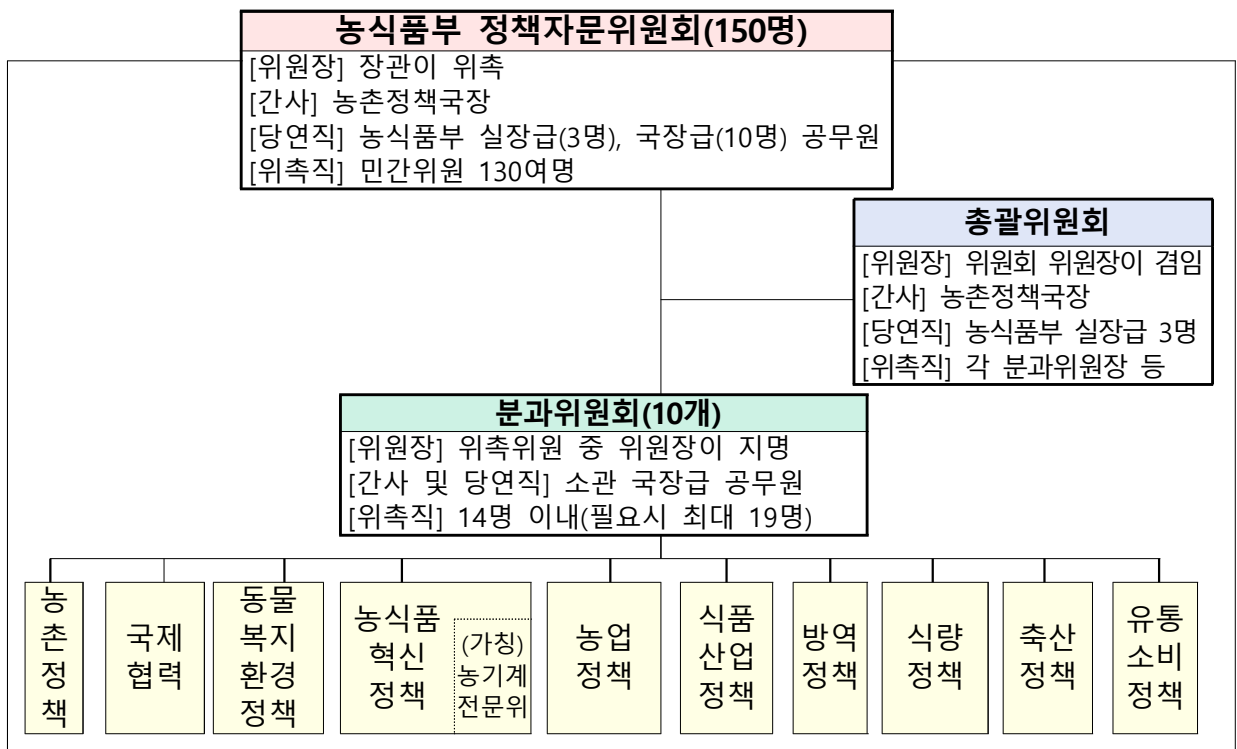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도 2023년 1월 관련 훈령을 마련하고, 2023년

9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위촉을 완료하였음.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
기계화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구성)** 위원장(장관 위촉) 포함 150명 이내(임기 2년)
 - **(운영)**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로 운영
 - **(본위원회)** 농식품부 실·국장급 공무원(13명) 포함 150명 이내
 - **(분과위원회)**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총괄위원회)** 농식품부 실장급 공무원(3명)과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



- **(운영계획)**
 - 정부위원회 정비지침('22.7.)에 따라 정비(비상설화,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을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포함하여 운영 * 비상설화 위원회는 필요시 별도로 구성·운영 가능

구분	현행(정부위원회)	개편(정책자문위)
비상설화 (12개)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정책분과위원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
	간척지운영위원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식량정책분과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정책분과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유통정책분과위원회
	도시농업협의회	농식품혁신정책분과위원회
단순폐지 (2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정책분과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식품혁신정책분과위원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2) 「축산법」 상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안 제21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축산법」 상 축산발전계획 및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인 축산발전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의회는 최근 3년간 3차례의 회의(서면 3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축산법」 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조건인 송아지 기준가격 심의, 국가축산클러스터²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심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음.

【제21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20)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② (생략)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④ ~ ⑧ (생략)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u>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⑧ (현행과 같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 관련 기타 개정 사항>

구 분	현행법	개정사항
제32조(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의 가격이 <u>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u> 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u>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u>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의 가격이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u> 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제32조의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3항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u>종합계획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u>	▶제32조의2제3항 삭제

나. 검토의견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개요>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축산법
구성	1989. 3. 31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수급조절 등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
주요기능	· 축산발전계획 심의 · 축산발전을 위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 심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위원 총 25명 : 당연(6명), 위촉(19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식량정책실장 등 6명 - 민간위원: 학계 6, 공공기관 1, 유관단체 등 12 등 19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2회(서면 2)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1	0	1	0	0	0
	2022년	1	1	0	1	0	0	0
	2023년	0	0	0	0	0	0	0
	총계	2	2	0	2	0	0	0
주요 성과	· 가축분뇨 처리 개선방안('20.12월 심의)을 토대로 제1차 축산환경개선대책(안) 심의('22.2월 발표) · 축산분야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과제 발굴('22.6.30~7.7, 서면)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 조건인 송아지 기준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축산업계의 의견수렴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축산업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 식생활에서 육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등 축산 관련 현안이 증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일 취지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폐지와 관련하여 민·관소통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²¹⁾을 참고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존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관련단체의 이견 해소 및 현재 우리위원회에 계류중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01921호,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에서 축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축산발전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기보다 비상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개정안	수석전문위원수정의견(안)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삭 제></u>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신 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입법예고 기간 : '22. 9. 7. ~ '22. 9. 16.
- 제출의견(528건) 세부내용 중 「축산법」의 개정(안 제21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관련 의견 제출 총 1건
 - (의견내용)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민관소통을 위해 존치 필요
 - (의견제출기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현행	개정안	수석전문위원수정의견(안)
제32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①-----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 ----- ----- ----- ----- ----- ----- -----	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2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①----- ----- ----- ----- -----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② (생략)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3. 위원회 비상설화 관련 검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임.

내용은 크게 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존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하여 비상설화하는 한편, ②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위원회 비상설화 관련 개정안 관련 내용 >

개정안 조문	근거법률	현행 위원회	개정 위원회
안 제2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운영위원회	간척지운영협의회
안 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안 제7조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안 제9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
안 제1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안 제11조	농업협동조합법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안 제1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협의회	도시농업협의회
안 제18조	식생활교육지원법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
안 제20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안 제21조	축산법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안 제23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의회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간척지운영위원회 비상설화(안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간척지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려는 것임.

【제2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 ----- -----, ----- ----- -----.		

현	행	개	정	안
④ ~ ⑧ (생략)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간척지운영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 -----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척지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간척지운영협의회----- ----- ----- ---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간척지운영협의회----- ----- ----- ----- -----.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운영협의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운영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협의회-----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건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비상설화려는 것임.

	간척지운영위원회																																														
법적 근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	2013. 1. 18.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주요기능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위원 총 14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1 등 4명 - 민간위원: 학계 5, 공공기관 2, 유관단체 3 등 10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3회 (서면 3)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총계</th><th colspan="3">본회의</th><th colspan="3">분과위원회</th></tr><tr><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r><tr><td>2021년</td><td>1</td><td>1</td><td>0</td><td>1</td><td>0</td><td>0</td><td>0</td></tr><tr><td>2022년</td><td>1</td><td>1</td><td>0</td><td>1</td><td>0</td><td>0</td><td>0</td></tr><tr><td>2023년</td><td>1</td><td>1</td><td>0</td><td>1</td><td>0</td><td>0</td><td>0</td></tr><tr><td>총계</td><td>3</td><td>3</td><td>0</td><td>3</td><td>0</td><td>0</td><td>0</td></tr></table>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1	0	1	0	0	0	2022년	1	1	0	1	0	0	0	2023년	1	1	0	1	0	0	0	총계	3	3	0	3	0	0	0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1	0	1	0	0	0																																							
	2022년	1	1	0	1	0	0	0																																							
	2023년	1	1	0	1	0	0	0																																							
총계	3	3	0	3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또한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간척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간척지운영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한 현행법 제5조제3항을 수정해야 동 위원회 비상설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컨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①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5년마다), ③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5년마다), ④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동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없이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비상설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5조를 간척지운영위원회 비상설화에 맞물려 일괄적으로 삭제하기보다 심의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지리적 표시심판위원회 비상설화(안 제4조)

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비상설화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와 관련한 위원 구성,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이를 ‘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 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심의회의 직무 규정(제4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의 설치)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의 설치)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	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	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다.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	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	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	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	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
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	람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	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농수산물품질관
			리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조사·연구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
			토하는 연구인력을 두어 협의회를 지	원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
			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현	행	개	정	안
가.	「 <u>농업협동조합법</u> 」에 따른 <u>농업협동조합중앙회</u>			
나.	「 <u>산림조합법</u> 」에 따른 <u>산림조합중앙회</u>			
다.	「 <u>수산업협동조합법</u> 」에 따른 <u>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u>			
라.	「 <u>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u> 」에 따른 <u>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u>			
마.	「 <u>식품위생법</u> 」에 따른 <u>한국식품산업협회</u>			
바.	「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한국농촌경제연구원</u>			
사.	「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한국해양수산개발원</u>			
아.	「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한국식품연구원</u>			
자.	「 <u>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u> 」에 따른 <u>한국보건산업진흥원</u>			
차.	「 <u>소비자기본법</u> 」에 따른 <u>한국소비자원</u>			
3.	시민단체(「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u> 」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u>			

현	행	개	정	안
4. <u>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u> ⑤ <u>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u>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u> ⑦ <u>심의회</u>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u>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u> ⑨ <u>농수산물 품질관리 등의 국제 동향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u> ⑩ <u>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조(심의회</u>의 직무) <u>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u>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u>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u>				
3. <u>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u>				
4. <u>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u>				
5. <u>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u>				
6. <u>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u>				
7. <u>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8. <u>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u>				
9. <u>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u>				
10. <u>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u>				
11. <u>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u>				
12. <u>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 ③ (생략)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④ -----		

현	행	개	정	안
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u>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u>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u>제9항에 따른</u>	-----
		-----		-----
		-----		-----
		-----		-----
		-----		-----
		-----		-----
		-----		-----
		-----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		

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u>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u>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 <u>등록을</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		

현	행	개	정	안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 9. (생략)		<삭 제>		
		2. ~ 9. (현행과 같음)		

② 검토의견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최근 3년간 회의개최 건수를 살펴보면,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분과위원회는 연평균 8회 개최되고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제7항 및 제8항²²⁾에 따르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본회의 개최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임.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법적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구성	2012. 7. 23.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의 설치)

⑥ 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설치 목적	·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주요기능	·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위원 총 55명 : 당연(25명), 위촉(30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등 17 - 민간위원: 교육인 15, 언론 및 시민단체 5, 유관단체 등 18 등 38명 - 위촉위원 임기 : 3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24회(출석 23, 서면 1)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총계</th><th colspan="3">본회의</th><th colspan="3">분과위원회</th></tr><tr><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r><tr><td>2021년</td><td>8</td><td>0</td><td>0</td><td>0</td><td>8</td><td>7</td><td>1</td></tr><tr><td>2022년</td><td>6</td><td>0</td><td>0</td><td>0</td><td>6</td><td>6</td><td>0</td></tr><tr><td>2023년</td><td>10</td><td>0</td><td>0</td><td>0</td><td>10</td><td>10</td><td>0</td></tr><tr><td>총계</td><td>24</td><td>0</td><td>0</td><td>0</td><td>24</td><td>23</td><td>1</td></tr></table>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8	0	0	0	8	7	1	2022년	6	0	0	0	6	6	0	2023년	10	0	0	0	10	10	0	총계	24	0	0	0	24	23	1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8	0	0	0	8	7	1																																								
2022년	6	0	0	0	6	6	0																																								
2023년	10	0	0	0	10	10	0																																								
총계	24	0	0	0	24	23	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위원회 정비기준(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 1회 미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3년간 연평균 본회의·분과위 합산 2회 미만)을 상회하고 있어 비상설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하여 개정안은 농수산물품질관리협의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동 협의회에 공무원 외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비상설화하면서 동시에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공고 전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절차의 변경은 위원회 정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해당 심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한편,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6조제2항은 동 법 제3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3조가 삭제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안)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기관에----- ----- -----.

현행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안)
<u>한정한다</u>)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가.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u>산림조합법</u>」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u>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u>」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마. 「<u>식품위생법</u>」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바.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자. 「<u>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u>」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 「<u>소비자기본법</u>」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2.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신설>	

현행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안)
	<u>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u>

나.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비상설화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따른 심판 및 재심을 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심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이로 인해 현행법상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장관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음.

【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 -----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현	행	개	정	안
<u>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u> <u>지리적표시 심판위원회</u>(이하 “<u>심판위원회</u>”라 한다)를 <u>둔다</u>.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u>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단서 신설></u> <u><신설></u> ⑥ (생략)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u>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 1. 2. (생략) ② 3. (생략) ④ <u>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u> 제46조(심판청구 방식) ① <u>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취소심판 또는 지리적</u>	----- -----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 다만, 제6항에 따라 심판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u> ⑥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u>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 ----- <u>이해관계인은</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3. (현행과 같음)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 제46조(심판청구 방식) ① ----- -----			

현	행	개	정	안
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u>심판위원회의 위원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		-----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
				<u>.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u>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u> 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u>심판위원회의 위원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
				<u>.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		-----
		-----		-----
		-----		-----
		-----		-----
		-----		-----

②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지리적표시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어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심판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법적 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구성	2009. 12. 10.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행정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주요기능	·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무효심판, 취소심판)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따른 심판 및 재심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 : 위촉직 1 · 위원 총 10명 : 당연(4명), 위촉(6명) - 공무원: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등 4명 - 민간위원: 학계 3, 산업계 3 등 6명 - 위촉위원 임기 : 3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1회 (출석 1)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	1	1	0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0
총계	1	1	1	0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그러나, 지리적표시 심판은 지리적표시 결정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불복제도로써 준사법적 절차에 해당함.

따라서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성격의 위원회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이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될 때 마다 지리적표시심판 위원회를 재구성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인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만 심판을 청구하여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음.

둘째,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이 원칙적으로 60일²³⁾의 단기간이어서 위원 선정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심판위원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실될 수 있음.

셋째, 심판마다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게 될 경우 재결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23)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변리사, 특허심판원 및 전문가 등의 심판위원 인력 명단을 상시 관리하고, 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위원회 구성 및 신속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비상설화(안 제7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7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u>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개최건수는 연평균 5.3건으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위원회 정비기준 (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 1회 미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3년간 연평균 본회의·분과위 합산 2회 미만)을 상회하고 있어 비상설화의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²⁴⁾에 따르면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는 ① 재해대책 및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예비비 및 의연금 등의 사용에 대한 사항, ③재해 피해 조사, ④군장비 병력 지원 필요성 심의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재해 발생시 신속히 관련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설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구성	1990. 1. 1.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결정							
주요기능	· 농업재해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위원 총 18명 : 당연(16명), 위촉(2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15명 - 민간위원: 연구계 1, 유관기관 2 등 3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 위촉위원 연임 가능여부 : 가능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16회 (서면 16)							
	구 분	총 계	본 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7	7	0	7	0	0	0
	2022년	5	5	0	5	0	0	0
	2023년	4	4	0	4	0	0	0
	총 계	16	16	0	16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비상설화(안 제9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음.

**【제9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u>		제6장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u>	
	제23조(<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u>) ① <u>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심의위원회</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3조(<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 협의회</u> 의 설치) ① <u>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 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u> ② <u>협의회</u> ----- -----. 1. ~ 4. (현행과 같음)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u>	
	제24조(<u>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① <u>심의위원회</u>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24조(<u>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u>) ① <u>협의 회</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다. 다만, 제23조제3 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u>심의위원회</u>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u>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략) 2. 제24조제2항에 따라 <u>심의위원회</u>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4. (생략)	는 것으로 한다. ④ -----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협의회</u>-----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현행과 같음) 2. ----- <u>협의회</u> ----- 3. 4. (현행과 같음)
---	--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간 개최 건수가 전무한 점을 감안하여 비상설화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74조25)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볼 수 있고, 그 설치의 필요적 사항으로 보이는바, 동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제29조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변경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 역시

-
- 25)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회의 미개최가 비상설화 및 사전심의 의무 삭제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할 필요는 없고, 공익직불제 ‘운영심의위원회’가 비상설 ‘운영협의회’로 개정되더라도 심의 기능은 동일하므로, 동 운영협의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운영회’로 보아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를 소집해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2020. 5. 1.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자문)
설치 목적	· 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주요기능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위원 총 20명 : 당연(6명), 위촉(14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6명 - 민간위원: 농업인단체 등 14명 - 위촉위원 임기 : 3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비상설화(안 제10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시·도에 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에 두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현행과 같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음.

**【제10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⑤ ----- ----- -----			

현	행	개	정	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u>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u>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심의회) <신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시·도----- ----- ----- 두고-----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시·도계획-----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에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회의개최가 저조함에 따라 이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①「농지법」 제30조²⁶⁾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②「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²⁷⁾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5년마다), ③「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²⁸⁾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5년마다)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는 점을 개정안 심사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는 경우, 타 법에서 정한 심의 등을 위해 필요 할 경우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해 나갈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법적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구성	2000. 2. 1.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주요정책 심의							
주요기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농식품분야 주요정책, 연차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위원 총 19명 : 당연(12명), 위촉(7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 - 민간위원: 연구기관·단체 7,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 등 18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6회 (서면 6)							
	구 분	총 계	본 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2	2	0	2	0	0	0
	2022년	2	2	0	2	0	0	0
	2023년	2	2	0	2	0	0	0
총계	6	6	0	6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6)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비상설화(안 제11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점검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협의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고,

협회의 자문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점검한 결과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11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생략)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구성·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u><신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 ----- ----- --.		
⑥ (생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가 자문위원회로서 그 개최 건수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이를 비상설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법적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구성	2012. 4. 23.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자문)							
설치 목적	·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점검 등에 대한 자문							
주요기능	· 농협 사업구조 개편 후속조치로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판매 활성화 사업 등을 평가·점검하고 그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위원 총 15명 : 당연(6명), 위촉(9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명 - 민간위원: 농업인단체 2, 소비자단체 1, 농업전문가 3, 농협 5, 민간 3 등 14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7회 (출석 4, 서면 3)							
	구 분	총 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2	1	1	0	1	0	1
	2022년	2	1	1	0	1	0	1
	2023년	3	2	1	1	1	1	0
	총 계	7	4	3	1	3	1	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시농업협의회 비상설화
(안 제13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협의회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제5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1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도시농업협회의)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도시농업협회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현	행	개	정	안
<u>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u>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 <u>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u> <u>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u> <u>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시농업협의회 개최건수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이를 비상설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규정하여 협의회의 성격 및 협의사항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하 기존 도시농업협의회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하여 개정안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의회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 수립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종합계획 심의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별도 검토 후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도시농업협의회
법적 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2012. 7. 13.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자문)
설치 목적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주요기능	·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도시농업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위원 총 15명 : 당연(7명), 위촉(8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7명 - 민간위원: 학계 3, 언론계 1, 민간 4 등 8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3회 (서면 3)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2	2	0	2	0	0	0
2022년	0	0	0	0	0	0	0
2023년	1	1	0	1	0	0	0
총계	3	3	0	3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8) 「식생활교육지원법」상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비상설화(안 제18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8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 ----- 국 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 -----. -----.		
④·⑤ (생략)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식생활 교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식생활 교		

현행	개정안
<u>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국가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u>위원장이</u> 인정한 사항 ③ <u>국가위원회</u>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u>국가위원회</u>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u><신설></u> ⑤ <u>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u>국가위원회</u>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u>육 협의회(이하 “국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u>국가협의회</u>-----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③ <u>국가협의회</u>----- -----. ④ <u>국가협의회</u>----- ----- ----- ----- -----.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협의회</u>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국가협의회</u>를 해산할 수 있다.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협의회</u>----- -----. 제3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u>국가협의회</u>----- ----- ----- ----- ----- -----

현	행	개	정	안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가 전무한 점을 고려해 이를 비상설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법적 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
구성	2009. 11. 28.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식생활 교육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주요기능	·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위원 총 25명 : 당연(17명), 위촉(8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11명 - 민간위원: 전문직업인 7, 유관단체 6 등 14명 - 위촉위원 임기 : 3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화(안 제20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
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에도 변경이
발생함.

현행법은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었고, “시·
도지사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조정위
원회에 통보”하였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있음.

**【제20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 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 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 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 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 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 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 한다. 다만, 제16 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 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 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 ----- 한다. 다만, 제16 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 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 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⑤ (생략)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 청서”라 한다)을 관할 시·도지사 또 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 각 호와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 청서”라 한다)을 관할 시·도지사 또 는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 ----- ----- ----- ----- 시·도지사에 게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 ----- ----- ----- ----- 시·도지사에 게 -----

현행	개정안
출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u>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u> 3. 4. (생략) ⑥·⑦ (생략)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u>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u>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2. <u>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된</u> ----- ----- ----- ----- ----- 3. 4.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u>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u>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건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비상설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한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마다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같은 취지에서 대부분의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정상 그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실질적으로는 상설로 운영되고 있음.

【분쟁조정위원회 비교】

위원회명	근거법률	설치규정	실제 운영형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필수적	상설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필수적	상설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필수적	상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필수적	상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필수적	상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	필수적	상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필수적	상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필수적	상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필수적	상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23.10.24.개정반영)	농약관리법 제23조의4	임의적 (구상운영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상설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필수적	상설

위원회명	근거법률	설치규정	실제 운영형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필수적	상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3	임의적 (둘 수 있다)	상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임의적 (둘 수 있다)	상설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필수적	상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필수적	상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필수적	상설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필수적	상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	필수적	상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66조	필수적	상설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필수적	상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7687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4조의3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의결이 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더라도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 인력 명단을 상시 구비함에 따라, 분쟁 신청에 따른 즉각적인 구성이 가능하고, 시·도 단계에서의 1차 분쟁조정 기간 동안 조정위는 분쟁 성격에 맞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구성	2013. 2. 23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 조정
주요기능	· 계약서(법 제7조), 사육경비 등(제8조), 준수사항(제9조) 및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 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 : 위촉 · 위원 총 9명 : 당연(4명), 위촉(5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1명 - 민간위원: 협회 6, 교육인 1, 전문직업인 1 등 8명 - 위촉위원 임기 : 3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10) 「축산법」상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비상설화(안 제21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축산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21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u>가축</u>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u>자문(諮問)</u> 에 응하기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u>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u>둔다</u> .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u> -----		

		- <u>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협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조절협의회</u>		

현	행	개	정	안
				를 해산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	-----	
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본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분과위원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7회 개최되었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2021년 3월 25일 법제화된 이후 운영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법적 근거	축산법
구성	2021. 3. 25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자문)
설치 목적	·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주요기능	·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개선,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 등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예산	6,000만원 (*별도 예산 편성)																																														
위원구성	· 위원장 : 위촉직 · 위원 총 15명 : 당연(10명), 위촉(5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등 3명 – 민간위원: 공공기관 1, 농협 1, 소비자단체 1, 학계 및 전문가 9 등 12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19회(출석 18, 서면 1)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총계</th><th colspan="3">본 회의</th><th colspan="3">분과위원회</th></tr><tr><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h>합 계</th><th>출석회의</th><th>서면회의</th></tr><tr><td>2021년</td><td>10</td><td>1</td><td>1</td><td>0</td><td>9</td><td>9</td><td>0</td></tr><tr><td>2022년</td><td>8</td><td>1</td><td>1</td><td>0</td><td>7</td><td>6</td><td>1</td></tr><tr><td>2023년</td><td>1</td><td>0</td><td>0</td><td>0</td><td>1</td><td>1</td><td>0</td></tr><tr><td>총계</td><td>19</td><td>2</td><td>2</td><td>0</td><td>17</td><td>16</td><td>1</td></tr></table>	구 분	총계	본 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0	1	1	0	9	9	0	2022년	8	1	1	0	7	6	1	2023년	1	0	0	0	1	1	0	총계	19	2	2	0	17	16	1
	구 분			총계	본 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10	1	1	0	9	9	0																																							
	2022년	8	1	1	0	7	6	1																																							
	2023년	1	0	0	0	1	1	0																																							
총계	19	2	2	0	17	16	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비상설화(안 제23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한편,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심의 절차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각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③ <u>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756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756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의)		
1. <u>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u>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2. <u>해외농업·산림자원에 관한 사항</u>	1. <u>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2의2.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3.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2. 해외농업·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5.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u>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u> <u>업무를 총괄한다.</u> <u>⑦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비상설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법적 근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구성	2012. 7. 2.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심의·조정)
설치 목적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 심의
주요기능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자원의 반입,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제 협력사업 추진 및 그 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

	항 등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 상 중요 사항을 심의						
예산	없음						
위원구성	· 위원장(당연직)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위원 총 15명 : 당연(10명), 위촉(5명) -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 5명 - 민간위원: 관계기관 5, 전문가 3, 유관단체 2 등 10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2회 (서면 2)						
	구 분	총 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2021년	1	1	0	1	0	0
	2022년	0	0	0	0	0	0
	2023년	1	1	0	1	0	0
	총계	2	2	0	2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4.8.16. 제출

4. 부칙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시행일을 규정하고, 각 개별 법률 개정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법률 사이의 법적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과 관련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본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척지운영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간척지운영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부 칙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협의회
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농업·농
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
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
3항, 제9조제2항, 제10조의3제3항, 제17조제3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
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에 심의 또는 심사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2항, 제17
조제3항·제4항·제7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0항, 제22조
제5항 및 제31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에 심의 또는

부 칙

심사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2항, 제6조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식물신품종 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에 회부하거나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에 회부하거나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3조제5항에 따라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회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접수사실 등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

부 칙

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접수사실 등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사실과 그 검토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사실과 그 검토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본다.

제13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개별 법률마다 필요한 경우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됨.

경과조치 주요내용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심의회 등은 이 법에 따른 심의회·협의회 등으로 봄. ○ 위원의 임명·위촉·임기 - (통합되는 위원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폐지되는 위원회)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중 임기 중인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봄. ○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이 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위원회에 심의·심사요청된 사항은 새롭게 통합되는 위원회에 심의·심사 요청된 것으로 봄.

이는 신법에 따른 위원회·심의회와 구법에 따른 위원회·심의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사무 및 위원의 신분에 대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며,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